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령 제 739 호

1. 개정이유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정의를 추가하고, 조사항목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조사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1) “행정리”(行政理) 정의를 추가하여 조사대상 명확화

나. 제4조(조사사항)

- 1) “5년 전 농업·임업·어업 경영 여부 및 거주지” 삭제
- 2) “컴퓨터”를 “정보화 기기”로 통칭
-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4) 기타 조사항목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020.2.17.~2020.2.27.)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행정리”(行政理)란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시·군 조례에 의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호 “「작물 수확에 관한 사항」”을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8호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9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호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을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제3호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을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 “「어선의 종류, 척수, 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을 “「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

항」”으로 하고, 제6호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제2호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생활 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4호는 삭제하며, 제5호 “「작목반, 어촌계 및 농어업 법인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농산어촌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를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작물 <u>수확</u>에 관한 사항 4.~7. (생략) 8. <u>컴퓨터</u>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5의2. "<u>행정리</u>"(行政理)란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시·군 조례에 의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작물 <u>재배</u>에 관한 사항 4.~7. (현행과 같음) 8. <u>정보화 기기</u>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9.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10. (생략)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육림업, 벌목업, <u>양묘업</u>,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 (생략) 5. <u>컴퓨터</u>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6.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7. (생략)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삭제></u> 10. (현행과 같음)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육림업, 벌목업, <u>양묘업</u>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u>정보화 기기</u>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u><삭제></u> 7. (현행과 같음)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어선의 종류, 척수, 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	5. 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7. 5년 전 농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삭제>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2. 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삭제>

현행	개정안
5. 작목반, 어촌계 및 농어업 법인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농산어촌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삭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